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539
------	------

2024. 2. 29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2일, 이종환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 2. 2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종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신규 브랜드 제정 이후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, 현행 조례에는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배부만 가능한 실정임.
-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

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배부기준을 신설함(안 제7조제3항).
- 나. 기타 문안 및 자구를 수정 또는 현행화함(안 제1조, 제8조제4항 및 제10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신규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제공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홍보물품 배부 행위가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, 이를 통해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홍보물품 배부 기준 신설(안 제7조제3항)

- 현행 제7조는 ‘상징물 관련 사업 등’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내용과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부문 활용 가능성에

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업내용 중 ‘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’, ‘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’을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

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.

○ 다만,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,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별도 기준 없이 배부될 경우 정당한 홍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이와 관련하여, 「공직선거법」은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‘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실시되는 금품제공행위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홍보물품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「공직선거법」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직무상의 행위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- 이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은 각 호로써 홍보물품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시책사업과 시 주최 행사 참여자 등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.
- 다만, 제3호는 “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”이라고 규정한바 해당 문안이 홍보물품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 - “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”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은 없으나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(행정안전부령)은 별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.
 - 해당 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할 경우, 제3호 규정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, 이를 근거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.

(2) 문안 및 자구 수정 등(안 제1조, 제8조제4항 및 제10조)

- 안 제1조는 잘못된 띄어쓰기, 안 제8조제4항은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, 안 제10조는 지난 일부개정에서 누락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있음.
- 법제처가 발간하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은 반듯한 법령을

만들기 위해 <한글 맞춤법>, <표준어 규정> 및 <외래어 표기법>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각종 입안 시 본문의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의안번호
1539

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이종환의원	2023. 2. 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○ 신규 브랜드 제정 이후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의 필요성은 증대 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천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배부만 가능한 실정</p> <p>○ 이에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</p> <p>※ 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(①·② 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(신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.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.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 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		
추진경과	<p>○ 서울 상징물 조례 제정('98.3.10.)</p> <p>○ 서울 도시브랜드 발표('23.8.16.) 및 관련 조례 개정('23.12.29.)</p>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특이사항 없음		
대응방안	○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담당부서	서울브랜드담당관	팀장	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(☎2133-6187)
		담당	행정6급 강이랑 (☎2133-6194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기덕, 김원중,
문성호, 아이수루, 유정희,
이종배, 이효원, 최민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신규 브랜드 제정 이후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배부만 가능한 실정임.
-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배부기준을 신설함(안 제7조제3항).
- 나. 기타 문안 및 자구를 수정 또는 현행화함(안 제1조, 제8조제4항 및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청탁금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하는데”를 “관리하는 데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
2.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
3.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

제8조제4항 중 “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7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, 이를 <u>관리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관리하는 데</u> ----- -----.
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u> 1. <u>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 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 우</u> 2. <u>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 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</u>
제8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 ① ~ ③ (생 략) ④ <u>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</u>	제8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</u>

구하고,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
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
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
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
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
장이 정한다.

제10조(위반시 조치사항) 시장은 제
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
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
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
하여 「상표법」·「독점규제 및
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
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
여야 한다.

에도-----

-----.

제10조(위반시 조치사항) -----제
8조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 기추진사업(붙임 참고)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본 개정안은 홍보물품 배부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을 원활하게 배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추진 사업예산으로 홍보물품 제공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 서울시 상징물 관련 사업 예산

(단위: 천원)

관련 조항	사업명	예산액
제7조 (상징물 관련 사업 등)제3항	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사업	3,308,144

주 : 제7조(상징물 관련 사업 등)제3항 관련 예산은 총 3,308,144천원임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손제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] 2024년 서울시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사업 예산 (본 개정안 제7조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국내외 시민의 다양한 일상에서 서울상징물을 접하는 전방위적 마케팅
- 서울브랜드위원회 및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
- 상표권 보호 등 시 상징물(휘장, 브랜드, 해치) 관리 강화
- 신규브랜드 및 서울심벌 시민 확산을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

□ 사업내용

-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
 -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~7조
 - 위원회 5기 운영
 - 도시브랜딩 전략 제시, 도시마케팅 사업 제안, 시 정책브랜딩 자문 등
 -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의2
- 서울시 상징물 관리
 - 서울브랜드, 심볼 등 상표권 등록 및 관리
 - 해외도시브랜드 사례 공유 및 서울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논의
 - 서울의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
- 서울 신규브랜드 개발 및 확산
 - 서울의 핵심 정체성 도출, 서울 신규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, 선호도 조사 등
 - 시 보유매체(SNS, 유튜브, 옥외전광판 등), 주요 행사 및 축제 등 신규브랜드 홍보 및 확산
- 신규브랜드 등 서울 상징 홍보물 제작 및 홍보
 - 신규브랜드 홍보를 위한 상징물 활용 홍보용품 제작
 - 국내외 프로모션, 국제 행사·회의·축제 시 서울 상징 홍보물 확산을 통한 서울 상징물 이미지 제고
- 서울 심벌(해치)의 확산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
 -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
 - 인스타그램, SNS 등 서울 심벌 확산 온라인 마케팅 추진
 - 조형물, 아트벌룬 전시, 홍보물 제작 등 서울 심벌 확산 오프라인 마케팅 추진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신규 서울브랜드 등 서울상징물에 대한 국내외 호감도 제고 및 도시브랜드 중요성 공감대 확대
- 서울의 매력, 정체성을 담은 친근하고 직관적인 신규브랜드를 활용, 서울의 국내외 글로벌 인지도 제고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	= 31,200
	- 참석 수당 등	
	200,000원*13명*12회	
	○ 서울브랜드총괄관 수당	= 44,544
	58,000원*8시간*2일*4주*12개월	
	○ 서울상징물 상표권 등록 및 갱신	= 60,000
	400,000원*150건	
	○ 신규브랜드 등 서울상징물 활용 및 확산	= 700,000
	- 신규브랜드 활용 콘텐츠 등 제작	400,000
	50,000,000원*8편	
	- 신규브랜드 홍보 프로모션 등	300,000
	300,000,000원	
	○ 서울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등	= 500,000
	- 서울상징물 활용 기념품 제작 용역	
500,000,000원		
○ 서울 심벌 콘텐츠 개발	= 890,000	
- 해치 활용 콘텐츠 등 제작		
890,000,000		
○ 서울 심벌 확산 마케팅	= 402,400	
- 해치 캐릭터 확산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	400,000	
400,000,000		
- 캐릭터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	2,400	
150,000원*2회*8명		
○ 서울 심벌 활용 홍보물 제작 등	= 650,000	
- 해치 홍보물(물품) 제작	500,000	
25,000,000원 *20종		
- 해치 조형물 제작 설치(교체)	150,000	
15,000,000원*10개	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시책추진업무추진비	= 10,000
	10,000,000원	
민간인국외여비	○ 서울브랜드총괄관 국외여비	= 20,000
	10,000,000원*2회	

자료 : 2024년 서울시 홍보기획관 예산설명서 발취